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439호

「건축물관리법」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2년 7월 27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「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」 제정고시

### 1. 제정이유

「건축물관리법」 제4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에 대하여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사고조사를 할 수 있는 바, 체계적인 사고조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운영 총칙에 관한 사항(제1조 ~ 제3조)

운영규정의 운영 근거·목적, 용어정의, 적용범위를 제시하고, 지자체의 사고조사위원회도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

나.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제4조 ~ 제15조)

위원단을 포함한 위원회의 구성, 위원 자격,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, 임무 및 위원회 회의개최 등 세부 운영사항을 정함  
다.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운영 사무의 범위를 정함(제16조)

라. 위원회의 사고조사계획 수립, 현장조사, 원인분석 및 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서식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함(제17조 ~ 제24조)

### 3. 기타사항

이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(행정규칙)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[www.molit.go.kr](http://www.molit.go.kr))의 정보마당/법령정보/훈령·예규·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(전화: 044-201-4985 499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